

경기도체육회 『청탁금지법』 공무수행사인 대상자 안내

I. 법 제11조제1항제1호

-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
연번	위원회명	위원 총원(명)	공무수행 사인(명)	설치근거 규정(조항)
1	임원심의위원회	7	5	경기도체육회 규정 제38조 임원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
2	스포츠공정위원회	9	8	경기도체육회 규정 제39조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조
3	인사위원회	8	6	사무처 운영 규정 제5조 1항 인사위원회 규정 제1조
4	경기도체육대회 운영위원회	7	5	경기도체육회 규정 37조 경기도체육대회 규정 제11조
5	생활체육지도자 운영위원회	9	3	경기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 11조

※ 현재 내부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이 「공무수행사인」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지만, 위에 해당되는 위원들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II. 법 제11조제1항제2호

-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

연번	법인·단체·기관명	공무수행사인(명)	위임·위탁규정(조항)
1	경기도종합사격장	19명	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 경기도종합사격장 운영조례 제4조

III. 법 제11조제1항제3호

-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

연번	파견인원(명)	파견근거규정(조항)
1	-	-

IV. 법 제11조제1항제4호

-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·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·단체

연번	법인·단체 명	공무수행사인(명)	심의·평가규정(조항)
1	-	-	-